

●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276호

새서울철도주식회사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(최초)

「철도안전법」제7조에 따라 새서울철도주식회사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05월 30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철도안전관리체계 신청인

- 회사명 : 새서울철도주식회사
- 대표자 : 조 우 성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36(두원빌딩) 4층

2. 철도안전관리체계 대상

-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(일반철도)
- － 철도안전관리시스템(SMS)
- － 열차운행체계
- － 유지관리체계